성주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(백철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11월 일
제 출 자 : 백철현 의원 외 6인

1. 제정이유

○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, 성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나.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- 성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지원단체
다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(안 제4조)
-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, 교육, 의료, 법률지원 사업
-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
-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, 양육, 보육지원 사업 등
라.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 (안 제5조)
마.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의 설치(안 제6조)
바.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(권한의 위임·위탁)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(권한의 위임)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다. 기 타
・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 〔2017.11. 9~11.13.(5일간)〕

4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, 성주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□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○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
○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,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시책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,
○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과 안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 설치·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,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 하며, 도내 대부분의 시·군에서 제정 또는 제정 추진 중인 조례이며 성주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군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